

## II. 보험제도 변화

### 1.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제도 개선

#### 가. 검토 배경

- 일반손해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경우 미보고발생손해액(IBNR<sup>3)</sup>)을 적립하고 있으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 대하여는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방식이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 이로 인해 부채가 과소 계상되고 보험요율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미보고발생손해액을 포함한 지급준비금은 부채의 일부로서 그 추정의 적정성은 재무건전성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발생손해액을 증가시켜 보험료 산출에 영향을 줌.

#### <표 II-1>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산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지급보험금	미보고발생손해액(추산)
생명보험	42,589	5,435
장기손해보험	11,773	2,198
계	54,362	7,633

주 : 생보사는 한일, 하나, 카디프, SH&C, 뉴욕, 럭키, 푸르덴셜, PCA를 제외한 15개사 이며, 손보사는 국내 10개 일반손해보험사 기준임.

자료 : 금융감독원, FY2003기준.

3) 미보고발생손해액(Incurred But Not Reported) :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

## 나. 개선 방안

-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대상의 확대
  - 현행 적립대상인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 포함)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도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을 의무화함.
-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비율의 단계적 상향조정
  - 보험종목별로 과거 경험손해율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비율을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 시행 초년도에는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비율을 실제 추산율보다 낮게 설정한 후 3년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

**<표 II-2>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비율의 상향조정안**

구 분	기준금액	연차별 적립비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이후
생명보험	위험보험료 <sup>1)</sup>	3%	6%	실제 추산율 ( 9.8% ) <sup>2)</sup>
장기손해보험	위험보험료 <sup>1)</sup>	5%	10%	실제 추산율 ( 14.6% ) <sup>2)</sup>

주 : 1) 당해연도의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2) FY2003 기준으로 과거 경험손해율에 근거한 위험보험료 대비 미보고 발생손해액의 실제 추산율임.

-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도록 과거 경험손해율을 반영하여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추산·적립토록 함.
  - 적정한 부채평가를 위해 보험종목별, 회사별 특성에 맞도록 과거 경험손해율을 반영하여 미보고발생손해액을 산출함.

- 다만, 계약건수가 적은 보험종목의 경우 동종업계의 경험실적 또는 예정손해율을 적용한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을 허용함.
-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방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에 사용된 기초통계자료, 통계적방법 등을 선임계리사가 검증하고 책임준비금 검증의견서에 포함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함.
  -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방법의 전문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생·손보험회 및 선임계리사 주관하에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에 관한 계리실무기준을 마련함.

#### 다. 개선 효과

- 단계적 상향조정안을 따를 경우 시행초년도 FY2004에는 생명보험 1,648억원, 손해보험 820억원 정도를 적립해야 함.
  - 상기 금액은 FY2003 기준 과거 경험손해율에 의한 미보고발생손해액 추산액(생명보험 5,435억원, 장기손해보험 2,198억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임.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IBNR 적립율의 단계적 상향조정안을 적용할 경우 FY2004에는 2~5%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경험손해율에 의한 미보고발생손해액의 추정액 전액을 FY2004에 적립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은 5%~15% 하락할 것임.
  - 책임준비금의 충실한 적립을 통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가 기대됨.

## 2. 리스크중심 감독체제 추진

### 가. 감독체제의 전면적인 전환 추진

-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체제를 현행 사후적, 교정적 감독기능에서 리스크 중심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감독기능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음.

### 나. RAAS 시행 추진

- RAAS란 리스크감독체제의 핵심과제로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의 노출정도, 통제기능 및 감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별회사의 리스크수준에 맞는 감독수단을 제시하는 리스크평가 제도임.

※ RAAS(Risk Assessment and Application System), 2006년 시행목표

제1단계(2004) : RAAS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기준 마련

제2단계(2005) : RAAS 운영 실무지침 마련 및 시범운영

제3단계(2006) : RAAS 시행 및 전산화 추진 완료

- 2004년 중 여러 부문의 리스크 노출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항목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가중치 부여 등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함.
- 동 제도의 기초 인프라 기능으로서 리스크 노출정도를 계량화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함.

#### 다. 위험기준 자기자본요구제도

- 금융감독원은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보다 선진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RAAS 도입을 기반으로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보험회사에 내재된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상응한 최소자본량을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활용하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요구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 RBC(Risk-based Capital), 2007년 시행
    - 제1단계(2004년말) : 장기적인 제도 도입방향 설정
    - 제2단계(2005년) :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 제3단계(2006년) : 新 지급여력제도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위험기준 자기자본요구제도(RBC)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로 영국, EU, 미국 등 선진국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의 적용실태 및 개선 움직임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중점 실시하여 RBC제도의 기본 도입방향을 설정함.
  - 현재는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적합한 형태의 위험·자본 연관계수 및 필요자본량 도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또한 은행권의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적용될 바젤 II의 보험권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연구결과에 따라(2004년 11월) 보험업계의 리스크관리 수준 및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RBC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 추진해 나갈 예정임.

## 라.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선진화 지도

- 금융감독원은 리스크중심의 감독체제 전환과 함께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임.
  - 2004년 11월에는 리스크중심 경영을 위한 관리조직 운영 및 프로세스 정립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2005년에는 리스크관리 선진화 추진 상황에 대한 공시를 추진할 계획임.
  - 또한 보험회사마다 다양하게 운영되는 리스크 측정기준 및 방법, 지급여력기준액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인 '보험리스크 측정에 관한 모범기준'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2004년 10월)하였음.

## 3. 생명보험회사 구분계리제도 추진

-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는 투자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유·무배당 자산으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용한 후 손익만 구분하고 있음.
  - 1998년 금융위기 이후 무배당보험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유·무배당간 손익배분의 적정성 문제가 발생하였음.
- 정부는 손익배분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보험·회계 등 전문가로 T/F를 구성함.
  - T/F는 동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구분계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2004년 5월).

- 금융감독위원회는 평가손익 배분기준을 처분손익배분기준과 일치시키고, 구분계리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결정(2004년 6월)
- 자산구분계리(Asset Segmentation) 작업은 손익만 배분하는 종전 방식과 달리 자산의 귀속주체를 명확히 하는 복잡한 작업이므로 자산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관련 업계 및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해외사례조사 및 업계 현실 등을 반영하여 방안을 마련코자 민·관·학의 협동작업을 추진 중임.

#### 4. 기타 사업비관련 제도 변화

##### 가. 실제신계약비 이연 전환

- 2004년부터 기존 신계약비 이연기준이 실제신계약비와 예정신계약비 둘 다 인정하던 것을 예정신계약비에서 실제신계약비로 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됨.

##### 나. 종신보험 표준신계약비 예외조항 폐지

- 금융감독원은 사업비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종신보험의 경우 표준신계약비 한도 산정시 일반보험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왔던 예외조항을 폐지(2005.4)할 예정임.
- 이는 생명보험회사 종신보험을 통해 운용할 수 있는 사업비 축소를

초래하여 종신보험에 대한 영업력을 약화시킬 것임.

**다. 자동차보험 가격결정시 실제사업비 반영**

- 금융감독원은 '03.3.31 '자동차보험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보험종목별 실제사업비 배준기분을 개선하여 2004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은 금년부터 자동차보험료 조정신고시에 회사별 실제사업비가 예정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되는지 심사할 예정임.

**5. 퇴직연금제 도입**

- 퇴직급여제도 전환 (2005년 12월 도입 예정)
  - 퇴직금제를 존속시키면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퇴직연금제로 전환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법 시행 후 새로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도입하여 선택 기회 제공하며, 전환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연금규약 작성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급여수준(근로자)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 이상	근로자별로 다름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름)
부담수준(사용자)	현행 퇴직금과 동일 (운용실적 따라 다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매년 1회이상 납부)
급여 지급방법	연금자격 : 연금은 55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에게 지급(이외는 탈퇴일시금지급) 지급기간 :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5년 이상)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 사용자가 기여한 재원(자산)은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되어 관리, 운용

○ 적용대상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2008~2010년 사이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
- 영세업주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보완장치 마련

## 6. 농작물 보험제도의 개선

○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05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함.

- 국가재보험을 통해 민간시장에서 인수하기 어려운 거대한 자연재해 피해(손해율 200% 초과)를 정부가 인수하여 농민을 보호하고자 함.

- 국가재보험 도입을 계기로 민간보험회사가 참여함으로써 손해율 200%이하인 통상적 재해는 농협·민간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함.

○ 보험운영체계는 최대한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보험실적이 시장원리에 따라 요율조정에 반영되도록 과거 손해 회수 기간(pay-back period)을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

- 손해평가 검증제도 도입, 전문인력 확대 등을 통해 손해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가재보험 도입 및 재보험기금 설치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임.
  - 원수사업자인 농협의 책임을 상향 조정(농협 10%, 민간 90% → 농협 25%, 민간 75%)하여 사업효율성을 제고함.
- 적용대상 확대
  - 시장원리에 따른 보험운영체제 정착에 따라 사과·배 등 현행 6개 대상품목을 쌀 등 여타 품목으로 확대 추진코자 함.